

## 2024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 2024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,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### 기 상 청 장

※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1. 시험일시: 2024. 3. 23.(토), 10:00 ~ 11:40 (100분)

2. 시험장소: 대전둔산중학교

※ (주소)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 25번길 70(갈마동)

3. 시험장소 오시는 길

□ 대전지하철 갈마역 1, 2번 출구(택시 3분·도보 13분 소요 / [붙임1] 참조)

4. 응시자 준수사항

#### [일반사항]

가.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(08:00 시험실 개방)

나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시험 전일에는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다.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시험실 내 난방, 창문 환기 등을 할 예정이니, **각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**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**을 소지해야 합니다.

- 응시표 출력 방법: 기상청 홈페이지([www.kma.go.kr/kma/](http://www.kma.go.kr/kma/)) ⇒ 기상청 채용시스템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\*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바. **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**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시험시간 중 **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**(휴대전화, 노트북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BM 플레이어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**.

아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**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·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**.

자.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확인고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을 위해 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합니다. 화장실 사용 가능시간은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(10:20~11:30)이며, 시험 중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.

- 시험 중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사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에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.
-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, 사용 전·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- 같은 시험실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화장실 사용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한 명씩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.
- 화장실 이동 및 대기, 소지품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 모든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 이외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, 화장실 사용시간 내에 1회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 세부사항은 [참고]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차.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, 과도한 향수 사용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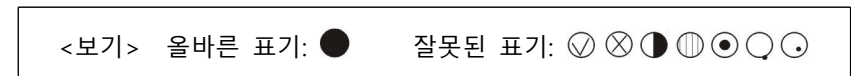
카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타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승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 ※ [붙임2] 답안지 견본 참조

가.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 사인펜』을 사용하여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.

-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나. 빨간색 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, 응시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(책형)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,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책형(1개)을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-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(1개)을 "●"로 표기하고, 필적감정용 기재란, 성명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.(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됨)

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편철과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의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마.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 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,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
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### 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할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
 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
 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소지품 검사, 지정 화장실 사용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
 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허용시간·횟수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하는 경우

다. 특히,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5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가.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정답가안 공개: **2024. 3. 25.(월) 11:00**

-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: **2024. 3. 25.(월) 11:00 ~ 3. 26.(화) 18:00**

※ 기상청 홈페이지([www.kma.go.kr/kma/](http://www.kma.go.kr/kma/)) => 기상청 채용시스템 > 정답 이의제기

※ 단, 공통과목(국어, 영어, 한국사)의 경우는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([www.gosi.kr](http://www.gosi.kr))를 통해 이의제기

- 최종정답 공개: **2024. 4. 1.(월) 18:00**

## 6. 가산특전 관련 안내

가. 필기시험 가산특전(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 자격증 소지자)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4. 3. 22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(지)청에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 여부는 보건복지부로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,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과목(5과목)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(만점의 40% 미만 득점)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
라. 가산점의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등

가.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: **2024. 4. 15.(월) 09:00 ~ 4. 16.(화) 18:00**

※ 공개: 기상청 홈페이지([www.kma.go.kr/kma/](http://www.kma.go.kr/kma/)) >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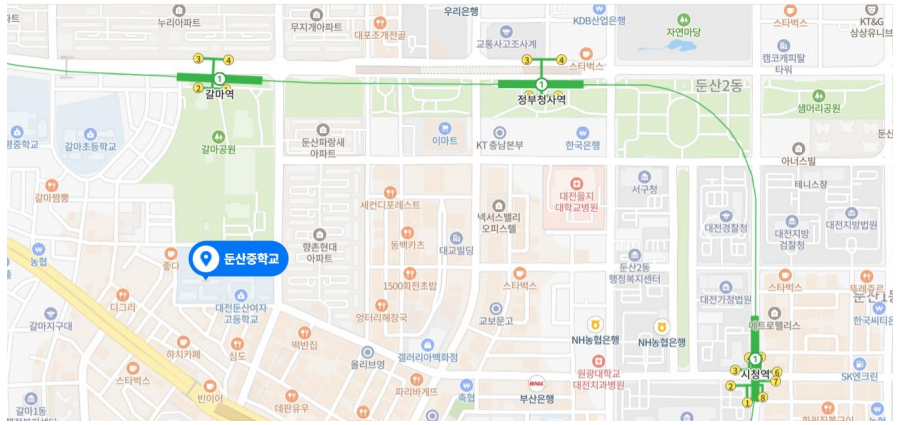
※ 이의제기: ☎ 042-481-7248

## 8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**2024. 4. 26.(금)**에 기상청 홈페이지([www.kma.go.kr](http://www.kma.go.kr))에 게시합니다.

# 붙임 1 시험장소 약도

## □ 오시는 길



## □ 대전지하철 갈마역 1, 2번출구에서

- 도보로 13분
- 버스(104번, 106번, 911번) 이용 시 8분
- 택시 이용시 3분

# 붙임 2 답안지 견본

## [ 앞면 ]

**2024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답안지**

<b>성명</b> (한글)  <b>【필적 감정용 기재란】</b> (예시) 본인은 위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함	<b>응시번호</b>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	<b>주민등록번호</b>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	<b>가산점 표기란</b>  10% ① 5% ② 3% ③ 5% ④	<b>※시험관리관 기재란</b>  시 관 리 관 인	
<b>책형 가</b> ① 할					
<b>성명</b> (좌측면부터 빈칸없이 차례로 기입)					
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	<b>국 어</b>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	<b>영 어</b>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	<b>한국사</b>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	<b>기상학개론</b>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	<b>일기분석 및 예보법</b>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

## [ 뒷면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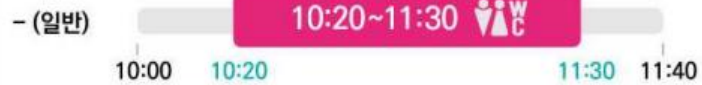
###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

- ※ 답안지 작성시 '컴퓨터용 흑색 사인펜' 외의 다른 필기도구(연필 또는 적색펜 등)를 이용한 가답안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가답안 표기로 판독기에서 중복답안으로 판독되는 경우 오답처리하며 이는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- 1. 답안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- 2. 답안지에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(수정액,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,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3. 작성요령
  - 가. 성명 : 본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, 좌측면부터 빈칸없이 차례로 기입하고,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  - 나. 응시번호 : 접수기관에서 부여된 응시번호를 앞번호(가), 장(나), 저소득층(다), 지역구분모집(라~지)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,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예시 : 9기0001번(9기0001), 9나0001번(9나0001)
  - 다. 주민등록번호 : 해당란에 자리수를 맞추어 숫자로 기재하고,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주민등록번호는 응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히 기재, 표기하여야 함
- 4. 점답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정답 하나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5. 답안지는 훼손 또는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)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6. 부정행위자,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퇴장을 명하며,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7. 가산표기란
  - 가.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
본인에게 해당되는 가산비율 중 유리한 것 한가지만 골라 해당란(10% 또는 5% 또는 3%)에 "●"로 표기합니다.
  - 나. 직렬별 해당자격증  
기상예보기술사, 기상기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, 응용지질기사,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표기합니다.

##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

### 사용 시간

시험시작 20분 이후 ~ 시험종료 10분 전, 1회만 사용가능



### 사용 절차

1.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
-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
2.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(소음주의)
3. 소지품 검사 : 양팔을 걷어올리고,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줌
4.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 재 실시
5.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(혼자 이동 불가)

### 유의 사항

-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 외에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  
-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 처리
-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(이동 및 대기시간, 소지품 검사 등)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주의
-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 불가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
-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 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 부정행위 금지

※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.  
- 사용가능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화장실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입실 가능